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

2012년도 제 4 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1. **개회일시:** 2012년 12월 8일(토) 오전 11시 ~ 13시
2. **장 소:**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250번지 더불어진인마을 강당
3. **참 석 자:** 서정희, 박성주, 장두석, 최원희, 남상만, 이수근
(이상 재적이사 7명중 6명)
4. **안 건**
 - 제1호: 2012년도 더불어보호작업장 2차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건
 - 제2호: 2012년도 법인사무국 일반회계 4차, 더불어주간보호 2차, 더불어보호작업장 3차,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3차 · 재가복지 4차 · 그룹홈 3차),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3차, 더불어진인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 제3호: 2013년도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 · 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 재가복지 · 그룹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 제4호: 2013년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 재가복지 · 그룹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사업계획(안) 심의 · 의결의 건
 - 제5호: 법인 운영규정 18차 개정(안) 심의 · 의결의 건
 - 제6호: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차 및 더불어진인마을 14차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 의결의 건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배석한 법인 사무국장 한상인으로부터 재적이사 7명 중 박문현 이사를 제외한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서정희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더불어보호작업장 참기름 사업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의



2012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회의록 낭독** : 법인 사무국장이 201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7. **경과보고**: 법인 사무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법인정관 및 부설시설 관리규정 변경의 필요성, 더불어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이어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8. 심의·의결사항

1) 안건 제1호 (2012년도 더불어보호작업장 2차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건) : ① 법인사무국장이 5분간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더불어보호작업장의 2차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② 추석선물세트 물량주문이 당초대비 폭주하여 그와 관련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음을 설명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서 추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③ 박성주이사가 창가름사업에 이용자들의 참여여부를 묻다. ④ 서정희 대표이사가 현재는 이용자들의 참여보다 직원들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고, 향후 이용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 답하다. ⑤ 서정희 대표이사가 다른 이견에 대한 의사를 묻자 참여한 이사 전원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⑥ 2012년도 더불어보호작업장 2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참석이사 전원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안건 제2호(2012년도 법인사무국 일반회계 4차, 더불어주간보호 2차, 더불어보호작업장 3차,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3차·재가복지 4차·그룹홈 3차),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3차, 더불어진인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① 법인 사무국장이 20분간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사무국 및 부설시설 각 시설별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다. ② 법인 사무국장이 법인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하던 중, 박성주이사가 법인사무국의 후원금 감액에 대한 설명을 후원자 감소가 아니라 후원실적미달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서정희 대표이사가 그렇게 정정할 것을 법인사무국장에게 요청, 이를 정정하기로 하다. ③ 이어 법인사무국장이 법인 및 부설시설 예산의 추경에 대한 주요골자들을 마저 설명을 하였고 심의·의결을 요청하다. ④ 참석한 모든 이사들이 이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다. ⑤ 박성주 이사가 추경에 따른 이사회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법인 사무국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사유발생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안건 제2호에 대한 의결을 마친다.

3) 안건 제3호(2013년도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재가복지·그룹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①법인 사무국장이 20분간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사무국 및 부설시설의 2013년 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② 서정희 대표이사가 법인사무국 재단발전



기금의 운영계획을 이사들에게 설명한다. ③ 법인 사무국장이 더불어주간보호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필요성, 더불어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필요성, 남구장애인 주간보호의 보일러 공사 및 장비보강에 따른 기능보강 예산제상, 남구재가복지봉사의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의 감액 사유, 남구그룸홈의 보조금 수입과 인건비 증액의 필요성,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과 관련 보조금 미지원에 따라 사업이월 예산에 따른 2013년 예산반영, 더불어진인마을의 기능보강에 따른 재산조성비 책정 등을 2013년 예산(안)의 주요골자로 상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한다. ④ 박성주 이사가 각 사업별 예산(안) 자료를 상세내용은 별도로 준비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준비하면 이사들이 보기에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 할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법인사무국장이 다음 이사회부터 한눈에 들어오도록 요약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회답하고 원안 의결에 동의한다. ⑤ 이에 최원희이사 및 남상만이사가 제청하여 안건 제3호(2013년도 법인사무국(발전기금특별회계·일반회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재가복지·그룸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예산(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4) 안건 제4호 (2013년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재가복지·그룸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사업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

① 법인 사무국장이 20분간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부설시설 각 시설별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한다. ② 서정희 대표이사가 개정된 각종법규를 반영한 각 시설별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진인마을, 양쪽 작업장이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있어 그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및 프로그램 질적강화를 위한 계획수립임을 강조하며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③ 이에 이수근 이사가 찬성을 하고 장두석 이사가 제청하여 안건 제4호 (2013년도 더불어주간보호, 더불어보호작업장, 남구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재가복지·그룸홈),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더불어진인마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5) 안건 제5호 (법인 운영규정 18차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

① 법인 사무국장이 5분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인운영규정 및 부설시설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② 그리고, 서정희 대표이사가 법인수당 및 직책보조비에 대한 항목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심의를 요청한다. ③ 모든 이사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안건 제5호 (법인 운영규정 18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찬성한다.

6) 안건 제6호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차 및 더불어진인마을 14차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

① 법인 사무국장이 부설시설의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다. ② 서정희 대표이사가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의 관리규정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한다. ③ 이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여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3차 개정(안) 및 더불어진인마을 14차 개정(안)을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9. 기타안건(정관 변경의 건) : ① 법인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임원의 정수를 현 이사수와 동일한 7인으로 변경함이 주요골자인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② 서정희 대표이사가 현재 이사정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현 이사들의 임기만료까지는 개정전의 법규에 따라도 무방하다며 설명하다. ③ 박성주 이사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관여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있을 것이며 엉뚱한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어 재단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④ 서정희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외부이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재단운영에 그런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회답하다. ⑤ 참석이사 전원이 지금 시점에서 정관개정을 하기 보단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사의 정수를 정확히 하여 심의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다.

10. 폐회선언: 기타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의결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폐회를 선언하다.

기록자: 법인 사무국장 한 상 인 

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함.

2012. 12. 8.

사회복지법인 더불어복지재단

대표이사 서 정 희



★이 사 박 문 현 (인)

이 사 박 성 주



이 사 장 두 석



이 사 이 수 근



이 사 최 원 희



이 사 남 상 만



★ 표시 임원은 불참자임.